

#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를 중심으로



How to Secure the Financi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 Welfare Projects

송지영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중기 재정지출(국비)이 5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도' 이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도 외에 별도의 사전 점검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 제도,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복지사업 관점에서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비 500억 원 이상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회'에서 협의 완료된 이후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복지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지원 금액이나 지원 대상을 축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직성 지출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통과한 일정 금액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심도 있는 타당성 분석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재정 여건이 중앙정부보다 취약하고 지자체 간 재정 격차가 큰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와 같은 사전 점검 장치의 필요성은 국비 투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필요성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1995년 지방자치제도의 전

면적 실시와 2005년 분권교부세제도<sup>1)</sup>의 도입으로 많은 사회복지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다. 또한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표 1.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

(단위: 조 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가율
자치단체 전체 예산(A)	137.5	139.9	141.0	151.1	156.9	163.6	173.3	184.6	193.2	210.6	231.0	5.3%
사회 복지 예산(B)	26.0	28.7	30.5	33.0	37.4	42.5	46.8	49.5	52.6	60.6	69.8	10.4%
비율(B/A)	18.9	20.5	21.6	21.8	24.2	26.0	27.0	26.9	27.2	28.7	30.2	4.8%

자료: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60](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60)에서 2019.10.16. 인출.

**표 2.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사업 비율**

(단위: 억 원)

분야	합계	정책사업		
		소개	보조사업	자체사업
전체	2,310,152	1,923,749	973,636	950,113
	(100%)	(83.3%)	(50.6%)	(49.4%)
사회복지	661,588	659,707	597,246	62,461
	(100%)	(99.7%)	(90.5%)	(9.5%)

자료: 행정안전부. (2019c).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p. 44의 표 저자 재정리.

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세출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30.2%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분야 사업 평균적으로는 정책사업이 세출구조에서 83.3%를 차지하는데 사회복지사업은 99.7%로 대부분이 정책사업으로 추진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 부문에서 정책사업의 90.5%는 국고보조사업<sup>2)</sup>이

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는 자체사업의 비율은 9.5%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분야를 포괄할 때 국고보조사업이 50.6%로 나타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세출은 거의 국고보조사업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라 매칭하는 지방비의 증가로 인해 재정적 어

1) 분권교부세는 2005년 지방재정분권을 위해 67개의 복지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필요한 사회복지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신설된 세금이다. 애초 분권교부세는 2009년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추진하던 일부 사업의 국고보조 환원이 관계 부처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아 운영 기한을 5년 연장한 바 있다. 2014년 말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5년부터 분권교부세는 계획대로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되었다.

2) 국고보조사업은 중앙부처가 기획하고 일정 예산을 보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사업 유형이다.

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일부 여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자체복지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우려하는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sup>3)</sup>

한편 중기 재정지출(국비)이 5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2019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서 복지·소득이전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 체계 개편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도’<sup>4)</sup> 외에는 사전 점검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일반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자심사제도와 타당성조사 제도가 적용되지만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적용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금복지사업 등에 대해 별도의 점검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반대로 이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의 문제는 국고보조사업에 있는 것이지 10% 내외의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자체사업이 주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 제도,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복지사업 관점에

서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도입한다면 수행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 2. 지방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제도와 복지사업

### 가. 투자심사제도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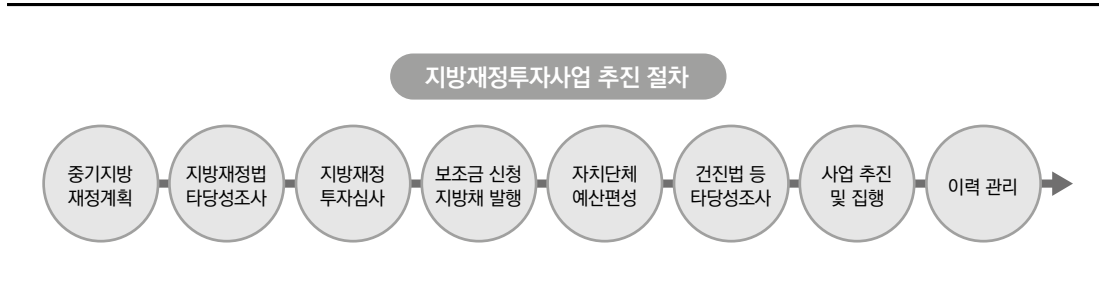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1992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요 투자사업과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전에 실시하고, 예산편성 없이 현물만 출자하는 사업은 사업 시행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도 심사한다. 만약, 투자심사 과정을 고의 또는 과실로 미 실시하였거나 투자심사를 실시하였지만 재검토, 부적정 결정 등으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법령 위반 사항이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기본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3) 예를 들어 성남시의 무상 교복 사업, 서울시의 청년수당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2013년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도’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 신설·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1. 지방재정투자사업 추진 절차



주: 1)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항 제9호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며, 투자심사 결과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수정이 필요함. 다만 사정 변경이나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 계획 반영 조건으로 추진 가능.  
 2)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서 수행함[한 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Local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자료: 행정안전부. (2019b. 8.).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p. 1의 그림 저자 재구성.

나. 투자심사 대상 사업 및 제외 사업

1) 투자심사 대상 사업

투자심사 대상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즉 예산이 편성되어 일정한 회계 절차를 거쳐 지출되어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로 지방자치단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모두 해당된다. 여기에 추가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상 부담이 되는 모든 행위 또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통해 부동산의 취득, 부동산의 형태·형질 변경, 부동산의 구조 변경, 시설물의 설치 또는 구축, 동산을 취득·변형하는 일체의 사업과 이에 부속되는 사업을 말하며, 부동산·동산과 같이 실체는 없으나 재정투자로 인해 성과

를 기대하는 사업(R&D 사업 등)까지 포함된다.

행정적 의미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세부 사업 예산에 해당되는 투자사업, 행사성 사업 및 현물이 출자(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당해 연도 또는 다음 회계 연도에 시행하고자 하는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들이 투자심사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총사업비의 범위에는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 장비 구축·구입비, 설계비, 감리비, 입찰공고비, 제세공과금, 예비비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가 포함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시행자, 예산편성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공유재산의 가격<sup>5)</sup>을 총사업비에 포함시켜 계상해야 한다.

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단, 관련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 또는 표준지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한 경우 그 가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투자심사 제외 사업  
 심사 제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22개의 사업과 소방시설, 공유재산 대체 취득, 재해·재난 복구 사업 등 7개 사업과 기타 심사 제외 사업 5개 등 총 34개 사업이다.<sup>6)</sup> 그러나 복지사업은 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표 3. 투자심사 제외 사업

-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경지 정리 사업,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배수 개선 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밭 기반 정리 사업, 국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개발 사업, 특정 지역 개발 사업
  - 「도로법」에 따른 국도 대체 우회도로 사업, 국가지원지방도 정비 사업
  - 「건널목 개량 촉진법」에 따른 철도 건널목 개량 사업
  - 「수도법」에 따른 광역 상수도 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촌 종합 개발 사업
  -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인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으로 시·도의 자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민간투자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공단 지정에 따른 사업
  - 「자연재해대책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재해 위험 지역 및 하천 정비(소하천 정비 사업 포함)
  - 「하수도법」, 「수도법」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사업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심의 사업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사업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 사업
  - 소방 장비, 119 구급 장비 및 소방용 헬기 구입
  -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의 건축 사업
  -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매입 사업
  - 부동산·동산의 취득·변경 등이 미수반되는 단순 개·보수 및 소모품 교체 사업
  -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외국자본)과 국비로 이루어진 사업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 총사업비의 80% 이상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 국제 행사 개최 계획의 사전 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 재해·재난 복구 등 기능 복원(원상 복구)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국가 주관 행사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
- 

자료: 행정안전부. (2019b. 8.).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pp. 15-16.

**다. 투자심사기관**  
 자체심사, 광역시·도 및 중앙 의뢰심사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지방재정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는 사업의 성격 및 총사업비 금액에 따라 시·군·구 및 광역시·도 자체심사는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6) 심사 제외 대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2019b, pp. 15-17)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표 4. 투자심사기관

심사기관	총사업비 금액별 대상 사업	비고
기초단체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억 원 이상~60억 원 미만 신규 투자사업</li> <li>• 1억 원 이상~3억 원 미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및 홍보관 건립 사업</li> <li>• 20억 원 이상 전액 자체 재원인 신규 투자사업</li> </ul>	자체심사
광역단체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신규 투자사업</li> <li>• 3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및 홍보관 건립 사업</li> <li>• 40억 원 이상 전액 자체 재원인 신규 투자사업</li> </ul>	
중앙심사 (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의 60억 원 이상~200억 원 미만 신규 투자사업</li> <li>• 시·군·구의 3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행사성 사업</li> <li>• 전액 자체 재원인 시·군·구의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 사업</li> </ul>	의뢰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의 300억 원 이상 또는 시·군·구의 200억 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li> <li>• 시·도, 시·군·구의 30억 원 이상 행사성 및 홍보관 건립 사업</li> <li>• 전액 자체 재원인 시·도의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 사업</li> <li>• 10억 원 이상 외국차관 도입 또는 해외투자사업</li> </ul>	

자료: 행정안전부. (2019b. 8.).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pp. 19-22.

스스로 심사하는 제도이고, 의뢰심사는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 기준에 따라 상위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가 심사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사업은 광역시·도 또는 행정안전부가 심사하고, 광역시·도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심사한다.

### 라. 투자심사 기준

투자심사 기준은 ① 국가 장기 계획 및 정책과의 부합성, ② 중·장기 지역계획 등과의 연계성, ③ 소요 자금 조달 및 원리금 상환 능력, ④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⑤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⑥ 주민 숙원·수혜도 및 사업 요구도, ⑦ 사업 규모·사업비의 적정성 등 7개이다. 각 기준별 구체적인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마. 사회복지 및 보건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현황

중앙투자심사에서의 사회복지 분야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구분되며, 다음과 같이 예산상의 모든 업무를 포괄한다. 또한 투자심사의 대상에 부동산·동산과 같이 실체는 없으나 재정투자로 인해 성과를 기대하는 사업까지 포함되고, 사회복지사업이 투자심사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모든 복지사업이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보건사업은 투자심사에서는 주로 의료원, 보건소, 응급의료센터, 재활병원 등의 건축물 사업과 국제 한방 바이오엑스포, 국제 당뇨병연맹 총회 등의 행사성 사업이 대상이 되어 왔다. 다만 2019년 5월 17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에 따라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는 투

표 5. 투자심사 기준

투자심사 기준	평가 항목
① 국가 장기 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종합개발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과의 연계성</li> <li>•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 수립 시 동 계획과의 연계성</li> <li>• 각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역점 시책사업과의 연계성 등</li> </ul>
②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법률에 의한 지역 단위 계획과의 관련성</li> <li>• 중기지방재정계획에의 포함 여부</li> </ul>
③ 소요 자금 조달 및 원리금 상환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보조사업 해당 여부 및 부담 비율 적정성</li> <li>• 지방비 부담(또는 확보) 능력</li> <li>• 지방채 발행 요건 해당 여부 및 원리금 상환 능력 등</li> <li>• 민자 확보 시 민간자본 투자 계획의 구체성 등</li> </ul>
④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에 미치는 재무적 수익성</li> <li>• 사업 시행 결과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수익성</li> </ul>
⑤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사업보다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유 또는 필요성</li> <li>• 현재 현황 수요 추세 등 사업의 성격 분석 및 예상 수요도</li> </ul>
⑥ 주민 숙원·수해도 및 사업 요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에 대한 주민의 사업 요구 정도, 사업 시행으로 인한 수혜를 받는 지역 및 주민 수</li> <li>• 사업 요구도: 자치단체의 사업 목표치 대비 사업 성과 수준</li> <li>• 일자리 창출 효과: 직접·간접 고용 효과를 계량적으로 제시</li> </ul>
⑦ 사업 규모, 사업비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혜 인구, 같은 조건의 사업 등과 비교 분석하여 규모·사업비의 적정 산출 여부 검토</li> <li>• 앞으로 수요 추세 등 발전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li> </ul>

자료: 행정안전부. (2019b. 8.).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pp. 25-26.

자심사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었다.

그렇다면 실제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과거 10년간 3864건의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sup>7)</sup> 중에 사회복지 분야 사업은 165건으로 4.27%를 차지한다. 투자심사를 받은 복지사업으로는 <표 7>과 같이 복지관, 장사시설, 임대주택 등의 시설물 설치 사업이 해당한다. 그중에서도 주로 노인 관련 시설 설치 사업이 45건,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사업 45건, 청소년 관

련 시설이 30건으로 많은 편이었다.

따라서 투자심사에서 복지사업은 시설물 건설 사업에 한정하여 지금까지 투자심사를 받아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투자심사 대상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되는 총사업비가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정의됨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일례로 복지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총사업비는 5년간 소요되는 중기 재정지출로 정의된다.

7) 시·군·구 자체심사와 시·도 자체심사, 의뢰심사 자료는 너무 방대하고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중앙투자심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6. 복지·보건 분야 부문별 업무

부문	부문에 해당하는 업무
080 사회복지	
081 기초생활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 최저 생계 및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업무</li> <li>■ 기초생활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li> <li>■ 자활 지원, 기초보장 지원 등[지방 공공근로사업(086 노동) 제외]</li> </ul>
082 취약계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li> <li>■ 사회복지 종합 지원 정책</li> <li>■ 장애인·불우 아동 등 사회복지(시설물 설치 포함)</li> <li>■ 복지회관 운영</li> <li>■ 사회복지 기반 조성, 사회복지 지원 정책</li> <li>■ 사회복지사업 평가 등</li> <li>■ 지역사회복지</li> <li>■ 노숙자 보호, 부랑인 시설 보호, 의사상자 및 재해구호[읍·면·동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016 일반행정) 제외]</li> </ul>
084 보육·가족 및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윤락행위 방지, 양성평등 및 여성 능력 개발, 아동·보육 관련 업무</li> <li>■ <b>여성복지(시설물 설치 포함)</b></li> <li>■ <b>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b></li> <li>■ 여성단체 지원 등</li> <li>■ 남녀 차별 금지, 여성 인력 양성 등 여성의 권익 증진</li> <li>■ 보육 인프라 구축, 보육시설 운용, 보육료 지원</li> <li>■ 가족윤리교육, 가족계획, 가정의례 등 가족문화</li> <li>■ 모·부자 복지 등</li> </ul>
085 노인·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령에 따른 제반 위험(소득 상실, 사회생활 참여 저하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업무</li> <li>■ 청소년 육성·보호·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li> <li>■ 노인 생활 안정, 노인 의료보장, 노인 일자리 지원</li> <li>■ <b>노인 등 사회복지(시설물 설치 포함)</b></li> <li>■ <b>노인복지관 운영, 장묘사업(묘지공원 조성 포함) 등</b></li> <li>■ 청소년 육성, 청소년 활동 지원, 청소년 보호</li> <li>■ <b>청소년시설</b> 용자, 기타 청소년 관련 지원</li> </ul>
086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조건의 기준,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근로자의 복지후생, 고용정책 및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타 노동에 관한 업무</li> <li>■ 근로자 지원 등 노정 관리</li> <li>■ 실업 대책, 고용 촉진, 공공근로사업 등</li> <li>■ 노동행정, 지방노동관서 운영, 노동위원회</li> <li>■ 고용 안정, 고용 안정 용자 지원, 고용 알선, 고용 환경 개선</li> <li>■ 능력 개발, 능력 개발 용자 지원, 직업능력 개발</li> <li>■ 고용보험 지원·반환, 고용보험 연구·개발, 직업재활 지원</li> <li>■ 장애인 근로자 용자, 장애인시설 설치 비용 용자</li> <li>■ 기능경기대회 지원, 고용 정보 관리, 직업훈련 지원</li> <li>■ 산재보험 및 산재 예방 관련 업무, 생활 안정 대부 사업</li> <li>■ 근로자 복지 지원, 근로자 휴양시설 지원, 실직자 점포 용자</li> <li>■ 기타 고용정책 수립 및 시행 업무</li> <li>■ 공무원노조 관련 업무</li> </ul>
087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및 예우</li> <li>■ 국가유공자 등 의료복지 지원 및 요양보호</li> <li>■ 제대군인 사회 복귀 지원</li> <li>■ 나라사랑교육을 통한 국민 호국정신 함양</li> <li>■ 호국 영웅 선양 사업</li> <li>■ 호국보훈안보단체 지원</li> <li>■ <b>국가유공자 숭모 사업 및 묘소 단장 사업</b></li> <li>■ 독립운동 관련 문헌 발간 등 편찬 사업</li> <li>■ 기타 보훈정책 수립 및 시행 업무</li> </ul>



부문	부문에 해당하는 업무
088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주택 건설, 수요자 용자 지원</li> <li>▪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주택 개량</li> <li>▪ 서민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매입임대</li> <li>▪ 재개발 이주자 전세자금, 주택 관련 금융 지원</li> </ul>
090 보건	
091 보건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 보건·위생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제반 업무</li> <li>▪ 의료원, 보건소, 진료소 등 운영, 수도 불소화 사업</li> <li>▪ 응급의료정보센터, 정신보건센터, 보건환경연구원 등 운영</li> <li>▪ 공중보건 및 공중위생 관리, 전염병 역학조사·관리</li> <li>▪ 생물테러 감시, 한센병·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li> <li>▪ 보건 관련 연구·개발비, 기타 보건행정비 등</li> </ul>
093 식품의약품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의약품안전에 관한 행정·관리·감독 및 규제</li> <li>▪ 식품·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li> <li>▪ 의약품품, 마약 등</li> </ul>

주: 1) 밑줄 친 업무가 실제 투자심사에 상정된 사업 유형임.

2)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건축 사업은 2019년 5월 17일 개정된 심사규칙에 따라 현재는 투자심사 제외 대상 사업임.

자료: 행정안전부. (2019b. 8.).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pp. 63-65.

### 표 7. 투자심사의 복지사업 유형

(단위: 건, %)

부문	사업 유형	건수	비율
노인·청소년	장사시설, 노인복지관, 노인병원	45	27.3
	청소년수련관	30	18.2
보육가족 및 여성	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회관, 여성복지센터	9	5.5
보훈	사적공원, 보훈공원, 보훈회관	6	3.6
사회복지 일반	종합복지관, 평생학습관	9	5.5
주택	행복주택, 임대주택, 실버주택	45	27.3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시설	21	12.7
계		165	100.0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 자료(2008~2018년) 저자 정리.

한편 연도별 사업 건수는 2015~2017년 급증 하였는데 그 이유는 행복주택이 해당 기간 동안 활발하게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행복주택 건설 사업이 2018년에 한 건도 추진되지 않으면서 사회복지 분야 사업 건수는 2017년 39건에서 2018년 14건으로 크게 줄었다.

한편 보건 분야 투자심사는 보건의료 부문의 사업에 대해서만 이루어져 왔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과거 10년간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 3864건 중에 보건 분야 사업은 55건으로 1.42%를 차지한다. 투자심사를 받은 복지사업은 <표 9>와 같이 의료원, 재활병원, 보건소, 의료 기술 지원 센터(R&D) 등이다. 2019년 5월 이후

**표 8. 연도별 사회복지 분야 사업 건수 추이**

(단위: 건)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건수	9	11	7	3	6	8	17	22	29	39	14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 자료(2008-2018년) 저자 정리.

**표 9. 투자심사의 보건사업 유형**

(단위: 건, %)

부문	사업 유형	건수	비율
보건의료	보건소	8	14.5
	기술 지원(R&D)	15	27.3
	의료원, 재활병원, 외상센터 등	24	43.6
	보건환경연구원	2	3.6
	바이오엑스포, 의학박람회 등 국제 의료 관련 행사	6	10.9
계		55	100.0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 자료(2008-2018년) 저자 정리.

투자심사에서 제외된 보건소 사업을 제외하면 총 47건으로, 연간 4~5건 정도 수준이다.

### 3. 복지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체계

#### 가. 복지·소득이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1999년 예산회계법 시행령상에 근거 조항이 신설되어 대규모 건설 사업에 대해 도입되었다.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2007. 1. 1. 시행)을 통해 동법 시행령상에 대상 사업의 범위가 정보화·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확대 시행되었다.<sup>8)</sup> 이후 2008년 7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회복지, 보건,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되었고, 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포함되는 대규모 신규 사업부터 적용되었다(이를 통칭하여 비투자 재정 부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라고 부른다).

일반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3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시행되는 반면, 비투자 재정 부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중기 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중기 재정지출은 「국가재정

8) 건설 사업은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을 말하며, 정보화 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산안 편성 세부 지침'의 '세부 사업 유형별 지침'에 따라 정보화 예산 및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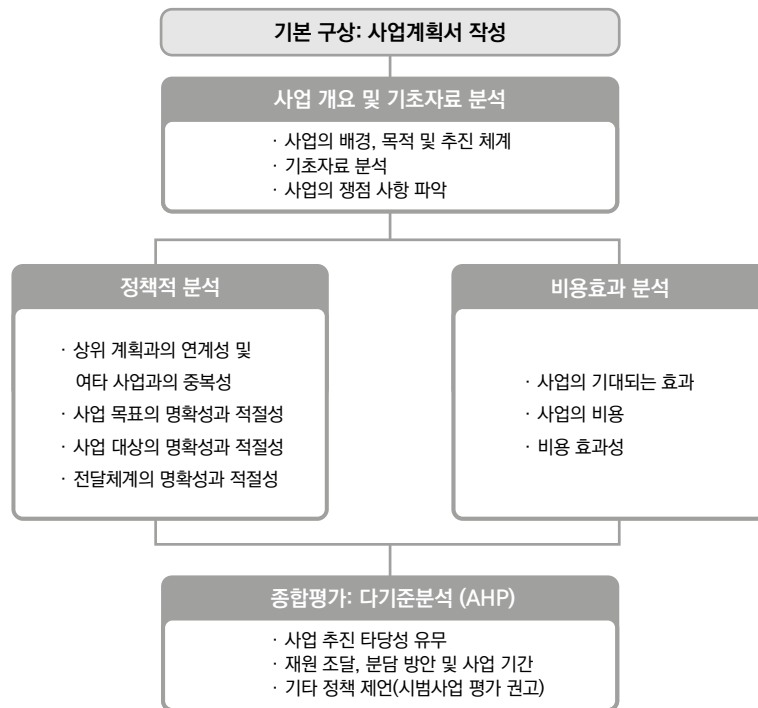
법」 제28조에 따라 제출하는 증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로서 신규 사업 착수 이후 5년간 소요되는 재정지출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즉 비투자 재정 부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 부담분만을 포함하며, 용지사업비 금액은 제외한다. 또한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요건 이외에도 법령에 의해 지원 여부가 의무화된 사업, 공적부조와 같이 단순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용자 및 이차보전사업은 제외된다(유경준 외,

2009).

복지·소득이전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2010년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에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고위험 임산부 지원 사업’ 등 몇 건의 사례가 있다. 수행 체계는 점차 발전되어 왔으며 2014년에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 체계는 다음과 같다.<sup>9)</sup>

일반 예비타당성조사와의 차이점은 경제성 분

그림 2. 복지·소득이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흐름도(2019년 4월 개편 이전)



자료: 한상민, 조민혜, 유한욱, 박태경, 김익모. (2014).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p. 49.

9) 2010년의 비투자 재정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흐름도는 2014년과 다소 상이하다.

석에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을 실시한다는 점이다. 또한 사업의 지리적 범위가 정해지지 않거나 사업의 효과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을 경우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2019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시 복지·소득이전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AHP 평가 체계를 평가 항목별 점검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즉 기존의 'Pass/Fail'이 아니라 ① 적정 ② 조건부 추진 또는 ③ 전면 재기획 후 재요구 등 3가지 방식으로 결론을 제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나. 복지·소득이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체계 개편 사항(2019. 4. 3.)

복지·이전지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개편 사항은 '시행·미시행' 결정이 아니라 좋은 사업이 기획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복지·소득이전사업에 대해 '경제성 분석(비용효과분석 등) → AHP 평가 → Pass/Fail 결정'의 기존 분석틀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통해 기존에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수행하던 복지·소득이전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분

표 10. 복지·소득이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항목(2019년 4월 개편 이후)

영역	평가 항목	평가 내용
1. 경제·사회 환경 분석 (100점)	① 경제사회 여건 분석	• 경제 규모·복지 발전에 비추어 사업 추진이 적정한가? • 민간 영역 등 유사 사업 존재 여부
	② 경제사회 영향 분석	• 저출산, 양극화 등 우리나라가 직면한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③ 재정의 지속 가능성	• 중장기적 재정 소요 변동 위험성 • 중장기적인 안정적 재원 조달 가능성
2. 사업 설계의 적정성 분석 (100점)	④ 사업 목표 적절성·시급성	• 목표가 명확하고 정책 방향 등과 연계성이 높은가? • 우선순위가 높은가?
	⑤ 수혜 대상의 적정성	• 사업 대상이 명확하고 사업 목표에 부합하는가? • 수요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는가?
	⑥ 추진 방법의 적정성	• 적절한 추진 방법이 설계되었는가? • 공공·민간, 중앙·지방 역할 구분이 명확한가?
	⑦ 전달체계 적절성	• 전달체계가 명확한가? • 수요자 접근이 용이한가? • 집행기구 자율과 책임성 확보가 가능한가?
3. 비용-효과성 분석 (100점)	⑧ 기대효과의 적정성	• 기대효과가 명확하고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가? • 성과 관리 계획이 적절한가?
	⑨ 비용 추정 적정성	• 비용 추계가 적절하고 발생 가능한 모든 비용이 검토되었는가? • 수요 변동에 따른 비용 변동 범위는?
	⑩ 비용 대비 효과성	• 비용 대비 기대효과가 적정한가? • 더욱 비용효과적인 정책 수단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자료: 기획재정부, (2019. 4. 3.).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보도자료.

석들을 변경하였다.

2019년 4월부터 시행된 분석들은 AHP를 실시하지 않고, 3개 영역 10개의 평가 항목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고, 영역별 100점 만점 기준으로 3개 영역 모두 85점 이상이면 ① 적정, 3개 중 일부가 85점 미만이나, 2개 이상이 70점 이상이면 ② 조건부 추진, 2개 이상이 70점 미만이면 ③ 재기획 후 재요구로 판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자심사위원회의 판단 결과가 정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로 판정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게 바뀐 것으로,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AHP분과위원회에서 수행하되 투자심사보다 좀 더 정량화된 방식이다.

#### 4. 나가며: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수행 체계

##### 가.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필요성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중기 재정지출(국비)이 5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음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 역시 수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즉 현재의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는 복지관, 임대주택, 청소년 수련관 등의 물리적 시설물

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과 그 하위 법령체계를 살펴보면, R&D사업과 같이 물리적인 실체가 없더라도 재정투자로 인한 성과를 기대하는 사업은 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복지사업 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투자심사 대상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되는 총사업비가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정의됨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사회복지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자체사업의 비율은 10% 미만에 불과하기에 지금까지는 자체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등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복지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의 시선이 일부 생겨나고 있다. 복지사업의 특성상 한번 이루어지면 중간에 중단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복지사업이 현금성 사업으로 추진되어 지금의 하방경직성이 크다는 점,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복지사업은 결국은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대한 우려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심한 상태에서 지나친 자체복지사업의 추진은 지역 간 복지 수준 격차 및 불평등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도 우려의 시선이 있다.<sup>10)</sup>

10) 출산장려금 등 일부 사업은 지역별로 상당한 수준 차이가 있다.

이 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기 재정지출이 일정 규모 이상 투입되는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투자심사를 통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나.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수행 체계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sup>11)</sup>의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 중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도’와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연계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도’의 관계를 통해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회’를 통과한(협의 완료) 사업 중 중기 재정지출(국비)이 500억 원 이상인 복지사업은 해당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거나 면제 사업으로 신청한다.<sup>12)</sup> 이후 절차는 다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선정 절차와 동일하다.

따라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상 5년간 재정지출이 일정 금액 이상인 복지사업 역시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회’에서 협의 완료된 이후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즉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정의를 기존의 시설물 건립 위주의 정의에서 나아가 복지사업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중기 재정지출 기준으로 정의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도 명확하게 투자심사 대상이 될 것이다.

다만 예비타당성조사와 달리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는 투자심사를 전제로 하고, 투자심사는 금액에 따라 투자심사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의 일정 금액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 제안하는 금액 기준은 현재 「지방재정법」 제37조 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기준인 500억 원이다. 5년간 투입되는 중기 재정지출이 500억 원인 지방자치단체 자체복지사업은 대규모 사업에 해당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금액과도 일치한다.

이 글에서 제안하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의 수행 체계는 [그림 3]과 같다.

1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1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돌봄 지원 서비스’(2018. 9. 20,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회) 사업은 2018년 12월 13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두 자료를 비교한 결과, 연간 이용 인원과 중기 재정지출 금액은 차이가 있으며, 이는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회 이후 예타 사업으로 올리기 전에 보건복지부가 사업 규모를 일부 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금까지 복지부 사업은 대체로 법령에 따른 사업 또는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으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아 추진되는 것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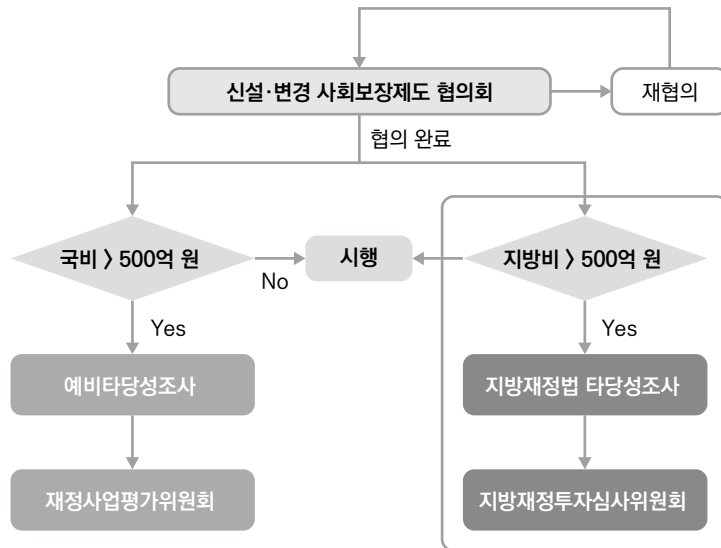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회’에서는 지방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의 신설 필요성, 기존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여부, 대상자 및 지원 내용의 적정성, 전달체계 등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하여 적정할 경우 협의를 완료하게 된다.<sup>13)</sup>

이후 국비가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지방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를 수행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수

행 결과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타당성조사 수행 결과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이때 사회복지사업 타당성조사 방법론은 현재 물리적인 복지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방법론과는 달라야 하며,<sup>14)</sup> 예비타당성조사의 방법론과도 상이할 것이다.<sup>15)</sup> 복지시설 건설 사업과 복지정책 사업은 최종 목표는 유사하더라도 사업의 수요층과 기대효과, 비용 및 편익구조 등이 다음과 같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첫째, 비용과 사업 효과가 사

그림 3.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의 수행체계 제안



자료: 저자 작성.

13)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회의 경우 2018년 1년 동안 833건의 안건을 협의 완료하는 등 매우 많은 사업을 검토하며, 의뢰 후 60일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 등 개별 안건에 따른 심도 있는 검토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14) 장애인 복지관 등과 같은 물리적 복지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일반 건축물 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  
 15) 복지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 결과는 재정사업분과위원회에서 평가하며, 1건의 사업에 대해 3시간 이상의 시간을 들여 평가 하나,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평가 방식을 수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실상 동일한 기간에 걸쳐 발생하게 된다. 이는 물리적 시설은 건설 이후 운영 단계에서 편익이 발생하는 것과 다르다. 둘째, 사업 주기는 짧더라도 매년 반복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의 장기적 조달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복지사업 재원 확보 방안 및 지속성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해당 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 추이를 검토하되, 특히 사회복지지출의 증가 추이를 동종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야 한다. 복지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지원 금액 또는 지원 대상을 축소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직성 지출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복지지출의 추이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가 추진하는 복지사업에 지방비가 매칭되는 사업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장래 재정 부담 역시 고려해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타당성조사에서의 평가 항목과 배점 체계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와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

##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2019. 4. 3.).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보도자료.  
 김정욱, 조혜정, 위서연, 정완교, 김정호. (2014).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류민정. (2015). 지방재정압박의 원인과 개선과

제: 정부간 재정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20(1), 113-145.  
 보건복지부. (2019). 2019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안영진. (2014). 사회복지정책의 분권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원 개선방안. 공법학연구, 15(2), 53-83.  
 원종욱, 고제이, 여지영. (2013). 사회보장기본법 이행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및 평가기준 연구(수시보고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경준, 김용성, 김정호, 안수란, 이석원, 박창균, 류덕현. (2009).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시범사업평가 표준지침 연구. KDI재정성과평가실 연구보고서.  
 유병선, 성은미, 이영미, 이경원, 최효진. (2017).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서.  
 유태현. (2017. 12.). 대규모 국고보조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사업.  
 윤희숙, 이영욱, 권형준, 한영은, 이항용, 민희철. (2014).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이희재, 서정섭. (2016).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전망과 정책방안: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0(3), 49-67.  
 정홍원, 이태진, 김동진, 강지원, 류진아, 김성주, ...최복천. (2017).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의 지원을 위한 정책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방안 (정책보고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홍원, 정경희, 이태진, 최복천, 김동진, 박종서,

- ...류진아. (2016). 지방자치단체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타당성 판단기준 연구 (정책 보고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상민, 조민혜, 유한욱, 박태경, 김익모. (2014).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함영진, 정홍원, 이연희, 류진아. (2016).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 관련 정보화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 행정안전부. (2019a. 3. 18.). 사회보장 협치와 적극행정 문화 정착. 중앙·지방이 함께 한다. 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2019b. 8.).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 행정안전부. (2019c).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15885호 (2018).
-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60](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60)